

# 감 사 보 고 서

- 외부강의등 제도운영 관련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2020.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 [ 목 차 ]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 배경 및 목적 ..... 01
- 2. 감사범위 및 중점사항 ..... 01
- 3. 감사인원 및 기간 ..... 01
- 4. 감사결과 처리 ..... 02

## II.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평 ..... 03
- 2. 지적사항 총괄 ..... 03
- 3. 분야별 지적사항(요약) ..... 04

##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06
-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06

-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증거서류 목록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 배경 및 목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예술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등 활동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2. 감사범위 및 중점사항

-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외부활동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 외부강의등 활동 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의무 준수여부
  - 외부강의등 활동에 따른 대가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여비 중복 지급 여부, 결재 및 보고 누락 여부 등 점검

##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 : 2명
  - ♥♥♥ : 감사총괄 등
  - ☼☼☼ : 임직원 외부활동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 (감사계획 변경) 당초 실무 감사관이었던 ◇◇◇ 대리의 퇴사( '20.9.4.)로  
부득이하게 감사관을 변경함

### □ 감사기간

- 사전준비 : 2020.8.3(월) ~ 8.7(금)
- 예비조사 : 2020.8.10(월) ~ 8.14(금)

- 실지감사 : 2020.8.17(월) ~ 8.28(금) / 10일간
- 감사결과 보고 : 2020.8.31(월) ~ 9.18(금)

#### 4. 감사결과 처리

- 실지감사 종료 후 ♠♠♠ 상임감사, ♥♥♥ 실장, ♣♣♣ 과장, 이상 3명은 2020.9.18.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지적사항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였으며, 2020.10.7. 처분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평

- 본 감사는 2019.6.1.부터 2020.6.30.까지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임직원들의 외부강의등 활동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공직기강을 제고하고자 실시함
-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활동은 문화예술의 진흥 및 전문지식 활용 등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졌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규정숙지 미숙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누락, 출장비 수령 건이 확인되어 해당 사실을 지적하고,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행동강령」 및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음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명)

합계			변상	징계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환급	회수						
2건	3명	149,000원	-	-	149,000원 (1건)	-	149,000원	3명 (1건)	-	-	-	-	-

### 3. 분야별 지적사항(요약)

□ 외부강의등 관련 「행동강령」 및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위반

○ 업무처리기준

- 위원회 「행동강령」 제27조 2항에 의하면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직원의 경우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을 따라야 함.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위원회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 6항에 의하면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신청하거나 휴가원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단, 사례비를 수령하는 외부활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지적내용

- ㉠㉠㉠㉠부 ㉠㉠㉠부장 등 2명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를 누락하였음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비고
1	㉠㉠㉠㉠부	㉠㉠㉠	2019.8.1.	심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휴가중 외부활동
2	㉠㉠㉠㉠부	㉠㉠㉠	2020.5.1. ~ 2020.5.20	자문	국악방송	근무시간 외 서면제출

- ㉠㉠㉠㉠부 ㉠㉠㉠과장 등 2명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비를 수령 하였음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출장비 수령액
1	㉠㉠㉠㉠부	㉠㉠㉠	2019.7.9	심사	대전문화재단	92,200원
2	㉠㉠㉠㉠부	㉠㉠㉠	2020.1.7.	자문	한국콘텐츠진흥원	56,800원

○ 조치계획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외부활동을 수행하면서 「행동강령」 및 「사무처직원 외부 활동 운영지침」을 미준수한 3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의(훈계)’ 촉구
- 출장비를 수령한 2인에게 149,000원을 ‘회수’ 처분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 분 요 구			조치 기한	감사자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	◆◆◆◆부 ○○○○부	외부강의등 관련 행동강령 및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위반	주의요구	-	3	2020.11월 말	♥♥♥♥ ☺☺☺
2			시정(회수)	149,000	-	2020.12월 말	

일련 번호	제 목 (지적사항)	처분종류	처분 요구사항
1	외부강의등 관련 행동강령 및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위반	주의요구	○ 외부강의등 외부활동에 있어 신고누락 및 출장비 수령 등 규정을 미준수한 3명에게 ‘주의(훈계)’ 촉구
2		시정요구 (회수)	○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잘못 수령한 출장비 149,000원을 대상자에게서 회수 처리

####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 분 내 역				
	조치양정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외부강의등 관련 행동강령 및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위반	주의(훈계)	■■■■■■■■부	부장	4급	ㄸㄸㄸ
	주의(훈계)	▨▨▨▨▨▨부	차장	5급	ㄹㄹㄹ
	주의(훈계)	▩▩▩▩▩▩부	과장	5급	ㄷㄷㄷ

####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해당사항 없음

#### [별첨]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증거서류 목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주의 · 시정(회수)

제 목 외부강의등 관련 「행동강령」 및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위반  
조 치 부 서 ◆◆◆◆부, ○○○○부  
관 련 자 ■■■■■■■■부 ■■■■■ 부장, ▨▨▨▨▨▨부 ㅎㅎㅎ 차장, ▩▩▩▩▩▩부 ※※※ 과장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할 때에는 예술위원회 「행동강령」 제27조 2항에 따라 요청 명세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3조 6항에 따라 사례비를 수령하는 외부활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준수 여부의 점검을 위하여 예술위원회 직무 유관 기관 148개를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외부강의등에 예술위원회 임직원이 참여한 내역을 요청하여 자료를 회신 받았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신고 누락

각 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임직원들이 내부 ERP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외부활동 내역과 대조한 결과 [표1]과 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총 2건의 활동내역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표1] 외부강의등 신고누락 내역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비고
1	■■■■■■부	ㄸㄸㄸ	2019.8.1.	심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휴가중 외부활동
2	▣▣▣▣부	ㅇㅇㅇ	2020.5.1. ~ 2020.5.20	자문	국악방송	근무시간 외 서면제출

※ 각 기관에 제출 요청한 자료 대상기간은 2019년 6월 ~ 2020년 6월에 해당

### 나. 출장비 수령

임직원이 업무연관성을 인정받아 출장을 신청하여 외부강의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례비를 수령한 외부활동 내역과 출장비 지급명세를 대조한 결과 [표2]와 같이 총 2건에 대하여 출장비를 청구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2] 외부강의등 관련 출장비 수령 내역

연번	소속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출장비 수령액
1	▣▣▣▣부	ㅇㅇㅇ	2019.7.9	심사	대전문화재단	92,200원
2	■■■■■■부	ㄸㄸㄸ	2020.1.7.	자문	한국콘텐츠진흥원	56,800원

※ 각 기관에 제출 요청한 자료 대상기간은 2019년 6월 ~ 2020년 6월에 해당

### 3. 관련자들 주장 및 판단

관련자 3명을 대상으로 신고누락 및 출장비 수령 등에 대하여 소명을 받아 본 결과 관련자들은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며, 해당 활동에 대한 요청기관의 촉박한 심사요청, 업무적 스트레스, 규정해석 오류 등에 기인한 실수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 누락 2건은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된 외부활동이었던 점, 출장비 수령 2건은 업무연관성에 따라 출장을 승인받은 외부활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적이라기보다는 관련자들의 규정숙지 미숙에 의한 단순 위반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외부활동을 수행하면서 「행동강령」 및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을 미준수한 3인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의(훈계)’를 촉구하고 [주의]

##### [관련자]

◇ ㉠㉠㉠㉠부	부장	㉠㉠㉠	주의(훈계)
◇ ㉡㉡㉡㉡부	차장	㉡㉡㉡	주의(훈계)
◇ ㉢㉢㉢㉢부	과장	㉢㉢㉢	주의(훈계)

- ② 출장비를 잘못 수령한 2인에게 149,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회수)]

##### [관련자]

◇ ㉠㉠㉠㉠부	부장	㉠㉠㉠	56,800원
◇ ㉢㉢㉢㉢부	과장	㉢㉢㉢	92,200원

## 증거서류 목록

처분요구안 NO.

제 목 : 외부강의등 제도운영 관련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구분	증거서류명	면수	비고
관계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동강령	47	사본
관계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7	사본
확인서	행동강령이행실태점검 답변서	5	사본
기타 증거서류	ARKO 임직원 외부활동 신청내역(19.06-20.06)	-	전자문서